

이천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7. 1.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6월 12일 이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 제1차(96.6.22), 제2차(96.6.24) 내무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한기영)

가. 제안이유

-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하는등의 방법원제도 개선을 위한 이천시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방법원의 경찰서, 파출소 파견근무제 폐지 (안 제3조)
- “방법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환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함(안 제4조)
-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안봉환)

- 본 제정조례안은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법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도록 하는등의 방법원 제도개선을 위하여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협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